

제300회 임시회
2011. 5. 20(금)

심사보고서

-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1. 5. 20(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11년 5월 4일

다. 상정일자 : 2011년 5월 12일

-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충북개발연구원 제61차 정기이사회(2011.3.18) 개최 결과 연구원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칭을 변경
 - 조례명을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조문의 내용 중
 - “충북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를 “충북발전 연구원”으로 수정함(제1조)
 - “연구원의”를 “충북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로, “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을 “충북발전연구원육성기금”으로 수정함(제2조1항)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 윤양한)

가. 개정동기

- 충북개발연구원의 법인명칭이 자원의 소모적 이용을 내포한 「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환경 여건에 따라 지속가능 및 더 나아간다는 뜻이 있는 「발전」이라는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 하려는 것임

나. 개발과 발전의 사전적 의미

- 개발은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는 것
- 발전이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

다.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관 명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시대적 환경 여건에 따라 개발에서 발전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북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를 “충북발전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1항 중 “연구원의”를 “충북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로, “충북개발연구원 육성 기금”을 “충북발전연구원 육성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u>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북개발연구원</u>(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운영 및 관리와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북발전연구원</u>의 재산운영 및 관리와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u>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원 육성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④ (생략)</p>	<p>제2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u>충북발전연구원</u>(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u>충북발전연구원 육성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운영 및 관리와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도와 관내 시·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과 그 외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이사의 추천) 연구원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